

네덜란드 캠프 반 자이스트(Camp van Zeist)소제 스코틀랜드 특별 법정의 '로키비' 사건 재판 평가 보고서

본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192(1998년)에 의거해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Kofi Annan'이 임명한 "국제 진보 연맹"의 국제 감독관인 '한스 쾨실러 Hans Köchler' 교수가 제출한 것이다.

산티에고-칠레, 2001.2.3. P/HK/17032

본인은 영국 검사가 '압델 바시프 엘메그라히 Abdelbasset Ali Mohamed Al Megrahi'와 '알-아민 칼리파 파히마 Al Amin Khalifa Fhimah'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2000년 5월부터 2001년 1월 최종 판결이 발표될 때까지 네덜란드 캠프 반 자이스트 법정에서 진행되었던 재판의 전과정을 관찰했다.

본인은 이 기소건과 관련된 모든 법정개정에 참석했으며, 기소인측과 피고인측 모두를 수 차례 만났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록원, 캠프 반 자이스트 소제 스코틀랜드 법정 총무부 직원들, 캠프 자이스트 교도소장과 부소장 그리고 그곳의 스코틀랜드 경찰팀장과도 빈번히 만났다. 또한 본인은 재판 개정 초기에 기소된 두 명의 리비아인을 직접 접견했다. 물론 이 모든 접촉은 스코틀랜드 법정의 총무부에서 주선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본인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 자료와 정보들을 검토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국제진보연맹"의 '로버트 타미트 Robert Thabit' 부 감독관과 상호 교환했다.

본인은 캠프 반 자이스트에서 두 명의 리비아 피고인을 만나 제1차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2000년 5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시신으로 제출했다.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 보고서와 관련된 어떤 논쟁이나 확인도 없었으나, 본인은 수석 재판관 '서더랜드(Sutherland)', '볼스필드(Coulsfield)', '맥클린(Maclean)'을 만나지는 않았다.

본인은 법관의 독립권을 보장하며 옵서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즉 본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국제 옵서버들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 재판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하고, 재판의 모든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옵서버의 임무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그래서 본인은 또 다른 옵서버인 '로버트 타미트'와 함께 이와 같은 옵서버의 임무 규정안에 합의한 바 있

다.

본인은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과 -앞서 언급한- 회의와 면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롯해 이번 기소건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을 시종일관 입회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이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의 공정 여부에 관한 평가서를 첨부하고 있다.

1- 법정 운영은 고도의 태려와 관리로 인해 완벽했다. 그리고 캠프 반 자이스트 소재 스코틀랜드 법정의 총무부에서 법정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재판 개정 초기에 동시통역에 있어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차후에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본인은 총무부로부터 만족할 만큼 충분한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본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두 명은 캠프 반 자이스트 소재 왕립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이것은 국내 및 국제법, 국제 인권 규범에 준했다. 특별 면회 중 두 피고인들이 본인에게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본인들의 동의 없이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특히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했던 두 번째 피고인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두 피고인의 특별요청에 따라, 본인은 피고인들과 가졌던 특별면회 결과 보고서를 지난 2000년 5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두 피고인이 캠프 반 자이스트 왕립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모종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었다. 그리고 캠프 반 자이스트 왕립 교도소장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실제로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두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다. 교도소 측도 본인이 옵서버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지원했다.

3- 두 피고인의 수감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 두 피고인이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2000년 5월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유엔 특히 유럽 연합 규정 중 인권에 관한 법안에 의거해 볼 때 두 리비아인의 기본 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 두 피고인의 인권 특히 구금 기간에 있어서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4- 재판 진행과정과 공정성과 관련해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재판이 열리는 동안 특정 외국 정부에서 -미국- 파견된 두 명의 대표가 법정에서 참석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견된 두 명이 재판 기간 내내 기소인 측에 배석했다.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 법정의 총무부에서 배포한 재판 참가자 공식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소인 측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서들

을 조사하거나 미준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그 결과 증업직 입장에서 방정석에서 앉아 재판 진행을 지켜보았던 본 읍서버에게는 두 사람이 기소인 측의 전략을 계획하고, 법정 제출용 자료의 종류를 제한하고, 법정에서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의 정보 유출을 막는 등 마치 기소인 측의 감독관과 같은 식책을 부여받은 듯 비쳐졌다.

5- 이 문제는 기소인 측 증인들 중 한 명이었던 '지아카 Giaka'와 관련된 미 중앙정보국의 전문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다. 재판 초기에 기소인 측은 동 전문이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자료에서 삭제해 줄 것을 고집했다. 그러나 그 전문이 공개되었을 때 - 비록 전문의 일부만이 공개되긴 했으나- 그 분건이 본 재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두 미국 대표자는 본 재판의 정상적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 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법정에 -어느 법정과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의 대표자가 기소인 측에 배석한다는 자체가 재판 진행과정에 있어 법정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재판 진행과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일반 법규에 위배된다. 그래서 본인은 두 미국인의 기소인 측 배석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법정의 진실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즉 본인은 두 사람의 배석이 재판의 올바른 진행을 막는 정치적 요인으로 간주하며, 처음부터 이를 허락하지 않아야 했다.

6-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나 재판 진행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의 변호인단에 외국인이 배석했다는 사실이다. 변호인단에 아랍인 동시 통역사의 배석은 원활한 재판 진행과 공정성 구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과거 리비아 정부의 고위 관리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재판소에서 對 유엔 및 미국 활동을 위해 리비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리비아인 변호사 '알-마끄부르 Maghour'씨가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사들의 견정으로 피할 수 있었던 본 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록 그가 리비아를 대표한 리비아 변호인 자격으로서 법정에 참석했으며,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변호인들과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인 정부 책임자 이상으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두 피고인이 네덜란드로 이송되기 이전에 본인들이 직접 선정된 변호인은 '이브라힘 알-레그웰 Ibrahim Legwell'이었으나, 차후 리비아 정부가 새 변호인으로 '알-마끄부르'를 선임하자 이에 항의하며 그가 사임했다는 사실이다.

요약하면, 미국과 리비아 정부 대표자들이 각각 기소인 측과 변호인 측에 참여함으로써 적어도 재판 진행 과정의 실질적인 질차에 있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피되었어야만 했던- 법정의 정치적 성격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본인은 변호인단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스코틀랜드 법정의 총무부에서 배부한 법정 참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또한 확인한 바 있다.

7- 이처럼 본 재판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고려와 관심으로 인해 기초 증거 자료 및 정보들을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기 이중 공작원이었던 ‘압둘 알-마지드 자아키 Abdul Majid Giaka’와 관련된 미국 정보부의 전분 비공개 시도였다. 그러나 차후에 변호인단이 전문 공개를 요구해서 상당 부분이 공개되었으나, 전문의 전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법정은 공개된 일부 전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본인은 증립 읍서버르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관련된 기타 다른 정보들도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변호인단 ‘테일러(Taylor)’와 ‘킨(Keen)’에 의해 비롯된 특별변호 분건에서 야기되었다.

스코틀랜드 검찰총장은 변호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모 정부로부터 접수한 바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한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떤 정부도 정보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즉 기소인 측의 추론과 모순되는 변호논리가 이 법정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비밀주의와 “국가안보”를 고려해서 인지, 그 정보들이 변호인 측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호 논리는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감독관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반적 변호논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인해, 본 법정이 법적 절차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객관적인 사안들에 대한 미미한 부분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인은 외국 정부 또는 정부 비밀 기관들이 - 비록 그것이 간접적일지라도- 법정에 제출할 자료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9- 그리고 본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변호인 측이 갑작스럽게 특별 변호를 철회하고, 재판 개시 초기에 제출했던 변호인 측의 성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변호인 측 증인 출석을 취소한 변호인단의 조치와 전략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변호인단의 행동에 진실과 신뢰성 시비를 초래했다. 읍서버르서 본인이 여러 차례 이 분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관련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10- 법정을 지배했던 다른 분위기로는 중요한 핵심 증인으로 기소인 측에 의해 신청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진실과 신뢰성을 크게 의심받았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 특히 ‘볼리어 Bollier’와 ‘지아키 Giaka’ 같은 증인들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 그 결과 증언은 상호 모순되었으며, 논리적으로 부합되지도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모순점이 많아서, 그들의 증언내용을 완전히 이

해하거나 판결을 내리는데 유효한 내용이 전무해서 오히려 재판에 혼신만 가져왔다. 그들에 대한 신뢰성은 뿌리 채 흔들렸으며, 그 결과 중언을 최종 판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채택하는 것조차 독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11- 국제 권력정치가 판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의 명확성을 지키려는 법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판사들 자신도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말타 상인의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법정 의견서 제 89절)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법적 신뢰와 논리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폭탄을 은닉했다고 추정하는 문세의 가방을 두 피고인이 말타 공항 내로 운반한 것이 1988년 12월 2일이라는 증거 자료를 빠기했기 때문이다. 기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12- 또한 본 법정이 첫 번째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반면에 두 번째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본 법정의 판결이 기본적으로 신뢰와 논리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기소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고 오히려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본 읍서머로서는 이상적으로 이해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두 피고인은 원래 "말타"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13- 그리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지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일련의 자료와 희귀한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즉 문인은 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물증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독단적이다 못해 미이성적인 판결로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법정 의견서에 언급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기소를 확정할 만한 사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법원의 판결이 독단적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다. 즉 재판의 종결 시점에서 기소인 측은 두 번째 피고인이 리비아 정보국 소속 요원 신분이라고 비난하며 기소 분리를 결정했으며 기소의 가장 핵심내용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기소 내용은 두 번째 피고인이 첫 번째 피고인과 서로 결탁해서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14- 이것이 본인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고려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예상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세 명의 스코틀랜드 판사들의 법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직성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볼 때, 기소인 및 변호인 측과 법원들의 의견 조율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조율이 실제로 있었다면, 네덜란드 주재 스코틀랜드 법정의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판결에 대한 법

적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15-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법정의 최종 판결이 아마도 정치적인 고려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밖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것은 사법권과 통치권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의 판결권을 방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이 전통적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확립되기 시작한 국제 공정원리의 범주에서이든 간에- 국가 통치자의 합법성과 국가 기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16-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인은 이번 재판이 총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했으며,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재판 초기보다 많은 의문점들이 재판 막바지에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기소된 사건이 명확해지기보다는 혼란만 더 가중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옵서버도 이처럼 난해한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사건 진상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하며, 이것이야말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희생자 가족과 국제 사회의 권리이기도 하다.

17- 국제 옵서버는 이번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론은 일반 법관들의 재판 진행 절차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즉 그 결론이란, 만약 정치기구와 정보기관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 개입한다면 공정한 재판 진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칸트'의 견해를 상기해야만 한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에 대한 기술에서 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고 있다. "비밀주의는 법규에 기초해 건립된 공화국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실로 어떤 나라에서는 정보 기관 설립 목적은 투명성이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사법권, 공정성, 진실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 행위에 있다."

18-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본 결과, 예상하게도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국제형법이 훼손되었으며, 국제 형법의 목표가 권력 정치나 삼권의 엄정한 분리없이는 가운데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내 형법에 적용되는 사안은 곧 국제형법에도 적용된다. 만약 국내 사법권이 행정권의 압력아래 놓이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관련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핵심적인 증거사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내 사법권은 그 고유 권한을 절대로 행사할 수 없다. 네덜란드의 스코틀랜드 법원이 직면했던 현실이 이러한 진리를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었다.

19- 본인은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본 재판 과정에서 초래된 실수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은 스코틀랜드 법에 의거해 당 사건 심의를 위해 임명될 5명의 항소심 판사들의 독립성과 정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20- 본인이 앞서 내린 평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캠프 반 자이스트 법원의 재판 진행 및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준 스코틀랜드 경찰당국 요원들과 스코틀랜드 법원의 총무부 직원들이 보여준 노고와 이상적인 공조를 감채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위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단지 개인적인 평가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유엔 헌장의 이념과 목적을 준수하는 세계인의 일원으로서 행한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것이 정당이는 혹은 개인적 이익 단체이든 간에 그들의 압력을 수용하지 않았다. 만약 권력정치를 배제할 수만 있다면, 형사재판의 진실은 공정한 심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법권은 정부 권력과 전대로 조화로우 수 없다. 그리고 법은 객관주의에 근거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만이 완성될 수 있다.

한스 쾨실러 박사.